

# 2014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(안)

의 안	
번 호	14-101

제출일자 : 2014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'마포구 보훈회관 신축'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## 2. 사업의 필요성

-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(구)신수동주민센터를 2011년 4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, 누수, 공간협소, 이용불편 문제 잔존
- 공간 협소로 9개 보훈단체 중 2개 단체(월남참전자회, 특수임무유공자회)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중에 있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
- 또한, 입주해 있는 단체도 3개 단체(상이군경회, 전몰군경유족회, 전몰군경미망인회)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고 있어 단체별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
- 구청장 지시사항(2014.1.9), 부구청장 지시사항(2014.1.16)에 의거 마포구 보훈회관 증축안과 신축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문제, 보훈단체의 신축 요구, 타 자치구 수준에 맞는 보훈단체 예우 차원, 신축의 경우 국고 500백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신축안으로 내부결정한 바 있음
-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우리구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염원인 보훈회관 신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

### 3.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계획

#### ○ 신축개요(안)

- 위 치 : 마포구 신수로 58
- 대지면적 : 496m<sup>2</sup>
- 건물용도 : 마포구 보훈회관
- 건축규모 : 지하1층, 지상4층 / 연면적 1,261 m<sup>2</sup>

구 분		배 치 (안)	
총 별 현 황	지하1층	269m <sup>2</sup>	체력단련실, 주차장, 기계실, 창고 등
	지상1층	250m <sup>2</sup>	공동회의실, 사랑방, 식당, 관리사무실
	지상2층	250m <sup>2</sup>	보훈단체 사무실(5개), 교육실
	지상3층	250m <sup>2</sup>	보훈단체 사무실(4개), 교육실
	지상4층	242m <sup>2</sup>	강당
건축면적		270m <sup>2</sup> (건폐율 54.5%)	
지상연면적		992m <sup>2</sup> (용적률 200%)	

○ 사업비 : 3,179,587천원

### 4.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업비	2015년		2016년		2017년
		구비	국비	구비	국비	구비
총 계	3,179,587	128,157	500,000	1,019,391	1,532,039	
공사비	2,939,391		500,000	939,391	1,500,000	
설계비	128,157	128,157				
감리비	32,039					32,039
철거비	80,000			80,000		

※ 국비 지원 : 5억원 (서울지방보훈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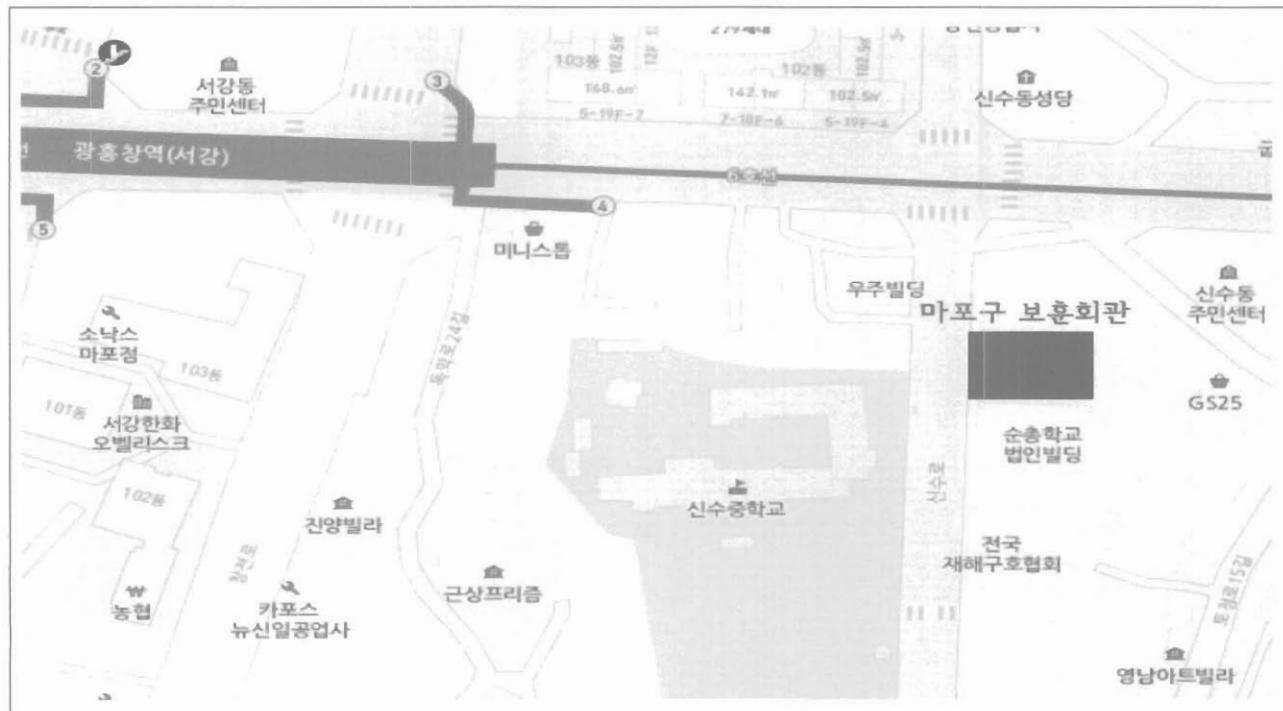
### 5. 법적 근거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12280호, 2014.1.21) 제39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859호, 2013.11.20) 제36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법률 제12201호, 2014.1.7)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631호, 2013.6.21) 제7조
-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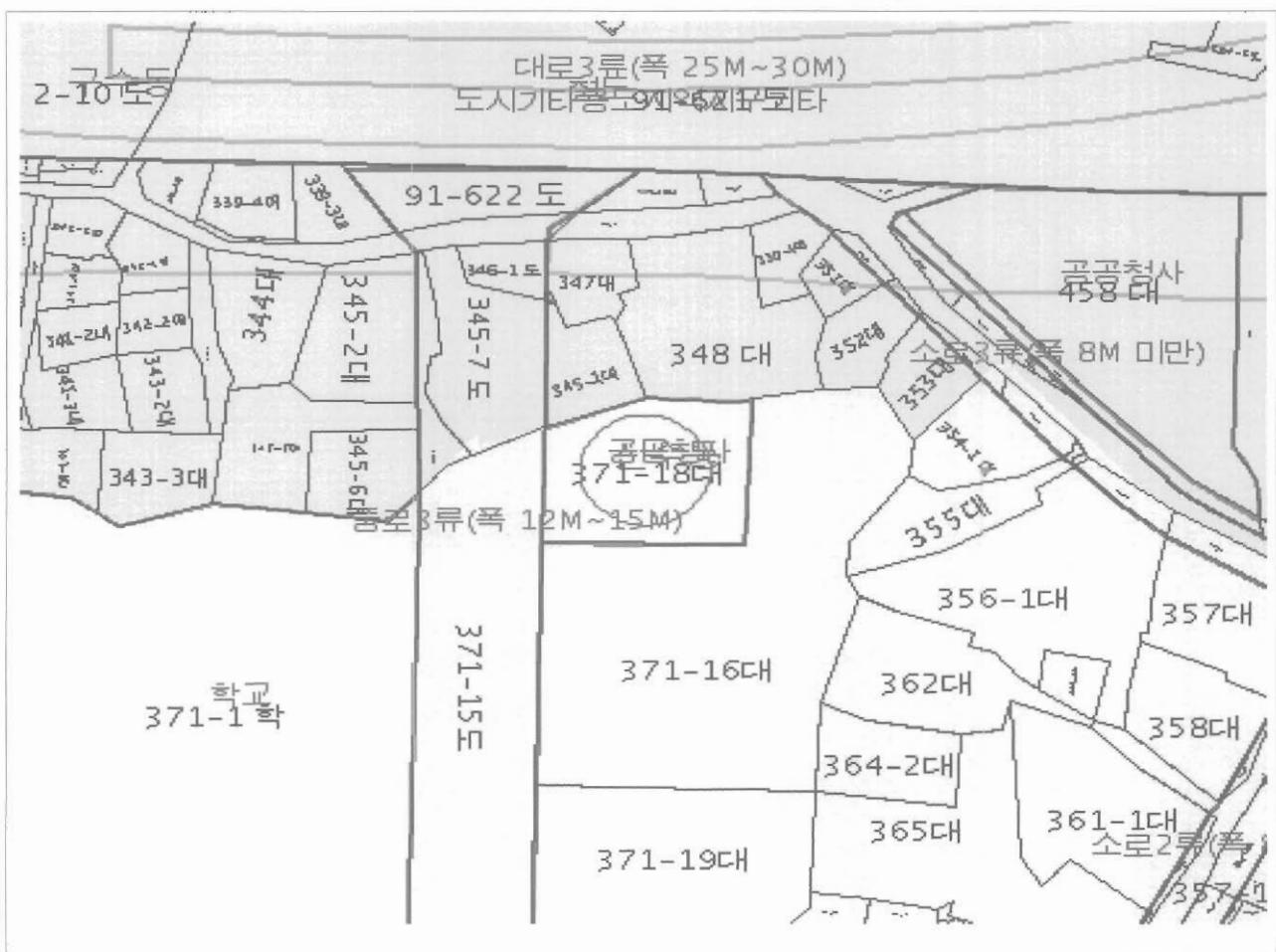
## 6. 향후 추진계획

구 분	추 진 일 정	비 고
설계발주 및 설계용역 계약 등	2015. 3. ~ 5.	
기본 및 실시설계	2015. 6.	
공사발주	2016. 3.	
공사완료	2017. 12.	

# 위 치 도



## 토지이용계획 도면



## 현장사진


사진 설명      현재 마포구 보훈회관 전면 사진

#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11-1)

( 단위 : m<sup>3</sup>, 천원 )

구	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	토지 건물 기타				1	1	3,179,587	1	1	3,179,587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 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 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##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11-2)

( 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 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건물	마포구 신수로 58 (신수동)	1 (496m <sup>2</sup> )	3,179,587 (공사비, 건설사업 관리비, 설계비 등)	2016. 3월 착공 ~ 2017. 12월 완공	신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적용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-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·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-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